

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(일반형) 창업기업 모집 공고

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『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(일반형)』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2월 20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.
① 실명등록 대상 : 개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② 실명등록 경로 : www.siren24.com (☎1577-1006) * 실명등록에 최대 3일 소요
* K-Startup 누리집 > 고객센터 > 일반매뉴얼 >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선정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「창업도약패키지」 '협약체결 협약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
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
① 일반형, ② 대기업 협업형, ③ 투자병행형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,
상기 ①, ②, ③ 유형 중 **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**합니다.

- ☞ 사전에 타유형(대기업 협업형 또는 투자병행형)을 신청한 경우 해당유형을 「접수 취소」해야 일반형에 신청 가능
 - * K-스타트업 누리집→사업신청내역조회→창업도약패키지 타 유형 접수취소→일반형 신청
 - ☞ '기업' 또는 '대표자'를 기준으로 상기 유형 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, 해당 유형 중 최종 '접수 완료'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평가 진행 예정
 - ☞ 신청·접수 기간 중 주관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[K-Startup 누리집] 사업신청 관리-사업신청-사업신청내역조회]에서 변경 가능

<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(안) >

유형	① 일반형(성공환원형 포함)	② 대기업 협업형	③ 투자병행형
지원금	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* (평균 1.3억원 내외) *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+ 성공환원형 선정 시 추가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	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(평균 1.3억원 내외)	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(평균 1.5억원 내외) + 한국벤처투자(KVCA) 투자연계**
프로그램	창업 프로그램	대기업 프로그램, 창업 프로그램	창업 프로그램
선정 규모	253개사 (성공환원형은 일반형 중 선정)	100개사	20개사

* 일반형 중 '성공환원형'을 신청할 경우 협약종료 후 '추가지원사업비'의 일부를 환원(반납)해야 함 [붙임 6 참고]

** 보조(사업화자금)에 1:1 매칭하여 'SAFE' 방식(조건부지분인수계약) 투자 예정

- 사업목적** :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·서비스 고도화 지원
- 지원대상** :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(도약기 창업기업)
 * 단, 업력 미충족 기업 중 '22~'24년 초기창업패키지, '22~'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, '22~'24년 창업중심대학(초기 창업기업) 참여기업은 [붙임 4]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'패스트트랙'으로 신청 가능
- 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('25.5월 ~ '26.2월 예정)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(기본 지원사업비 최대 2억 원, 추가 지원사업비 최대 1억 원, 평균 1.3억 원 내외), 창업프로그램 등

- **기본 지원사업비** : 창업기업이 일반형 선정 시 배정받은 정부지원사업비
- **추가 지원사업비** : 성공환원형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지원사업비의 최대 50%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비
- **성공환원형** :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에 선정된 도약기 기업 중 추가 지원사업비의 환원을 확약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유형

< 지원내용 >

구 분	지원내용
사업화 자금	• 창업기업 사업모델(BM) 혁신, 제품·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
창업프로그램	• 후속투자 유치,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관기관별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-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** : 제조·서비스 등 전 분야, 총 253개사

<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>

순번	주관기관명	선정규모	순번	주관기관명	선정규모
1	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	22개사	6	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	19개사
2	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	26개사	7	인천테크노파크	30개사
3	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	33개사	8	한국보건산업진흥원	20개사
4	부천산업진흥원	27개사	9	한국수자원공사	20개사
5	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	37개사	10	한국탄소산업진흥원	19개사

*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과거 신청률을 고려하여 배정(주관기관명 가나다순)

** 주관기관은 [별첨3] 주관기관별 소개자료를 참고하여 신청(사업장 소재지, 거주지와 무관)

협약기간 :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('25.5월 ~ '26.2월 예정)

지원내용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제품 제작, 자재권 취득, 사업모델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(기본 지원사업비 최대 2억원, 추가 지원사업비 최대 1억원) 지원 (평균 1.3억원 내외)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 **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 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 * 자기부담사업비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 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																
	< 총사업비 구성 >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사업비</th> <th rowspan="2">정부지원사업비 (기본 지원사업비 + 추가 지원사업비)</th> <th colspan="2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%</td> <td>총사업비의 70% 이하</td> <td>총사업비의 10% 이상</td> <td>총사업비의 20%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총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 (기본 지원사업비 + 추가 지원사업비)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현금	현물	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			
총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 (기본 지원사업비 + 추가 지원사업비)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													
		현금	현물														
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						
< 사업비 구성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1.5억원인 경우) >																	
창업 프로그램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사업비</th> <th rowspan="2">정부지원사업비 (기본 지원사업비 + 추가 지원사업비)</th> <th colspan="2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15백만원</td> <td>150백만원</td> <td>22백만원</td> <td>43백만원</td> </tr> <tr> <td>100%</td> <td>69.8%</td> <td>10.2%</td> <td>20.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총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 (기본 지원사업비 + 추가 지원사업비)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현금	현물	215백만원	150백만원	22백만원	43백만원	100%	69.8%	10.2%	20.0%
총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 (기본 지원사업비 + 추가 지원사업비)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													
		현금	현물														
215백만원	150백만원	22백만원	43백만원														
100%	69.8%	10.2%	20.0%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) 후속투자 유치, 글로벌시장 진출·확대 지원 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세부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후속투자 유치</td> <td colspan="2">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,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,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</td></tr> <tr> <td>글로벌 시장 진출·확대</td> <td colspan="2">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,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,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,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세부내용		후속투자 유치	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,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,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		글로벌 시장 진출·확대	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,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,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,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						
구분	세부내용																
후속투자 유치	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,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,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																
글로벌 시장 진출·확대	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,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,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,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주관기관별 자율 프로그램) BM·기술 고도화, 마케팅·판로, 후속 지원,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강점·전문성, 창업기업의 특성·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																	

※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[별첨 3]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**신청자격 :**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 트랙 해당 기업

- (도약기 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·제2의2호 및 제2조 제3호·제3의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(기업)
- (패스트 트랙 기업) '22~'24년 초기창업패키지, '22~'24년 재도전 성공패키지, '22~'24년 창업중심대학(초기 창업기업) 참여기업 중 [붙임 4]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(기업)

< 신청자격 세부조건 >

▶ 신청가능 업력 : 2018년 2월 20일 ~ 2022년 2월 19일
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 - 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▶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
 - ☞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▶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(개인·법인)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
 - ☞ 창업여부 기준표([붙임 1])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
 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- ▶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
 - ☞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- ★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'창업기업확인서' 등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
- ▶ 국외창업기업 해당 시 [붙임 2] 국외창업 기업 요건 및 범위 참조
 - ☞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제2의2호의 국외 창업에 해당할 경우,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따른 해외 법인설립일이(2018.2.20.~2022.2.19.)에 해당하여야 하며, 국내 사업자를 보유한 국내 법인·국내 영업소로 신청(해외 연락사무소, 사업자(국외 사업자 등)는 신청·접수 불가)
- ★ 온라인 신청 시 '국외 창업기업 여부'를 체크 하여야 하며, 국외 창업 기업 해당 시 국외 창업기업 요건 확인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(별도 안내 예정)

신청 제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 ([붙임 3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*, 창업중심대학(도약기 창업기업)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

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)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

*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(신청불가) : ①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('19~'20년 창구, '20년 마중, 정글, 엔업), ②대기업 협업 프로그램('21~'22년 에그, 씨앗, 이웃, 가치, 스타)

** 단,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('17~'21년)만 지원받은 자(기업)는 신청 가능

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 사업화 지원사업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, [붙임 5] 참고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「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. 단, 공고사업과 '동일연도'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

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-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, 거래 및 창업사업 통합정보 관리시스템(PMS)를 통한 사업비 지출이 불가한 자(기업)
- 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-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- 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⑫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4

신청 및 접수

접수 기간 : ‘25. 2.20.(목) ~ 3. 13.(목), 16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‘K-Startup 누리집’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(“제출완료” 이후에도 신청·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)
- * 신청·접수는 16:00 정각에 종료 (신규 신청 불가, 유형 변경 불가)
단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
신청 마감일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,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‘제출완료’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
-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신청·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·삭제 불가
- ④ 신청·접수 마감시간까지 사업 신청·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

신청방법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
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
- 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- 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- ***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[참고1]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사업 신청은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·접수하여야 하며, 타인이 신청·접수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-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, **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**
*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,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(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)

제출서류

- **사업계획서 1부** ([별첨 1] 양식)
 - 사업계획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‘일반형’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,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
- **기타 제출서류 각 1부** ([별첨 2] 양식)
 - 사업자등록증, 가점 증빙 등 [별첨 2]의 증빙서류 제출 목록 확인
* 가점 증빙서류는 **사업 신청 시 제출**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<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>

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 사업신청서	온라인 입력	-
② 사업계획서	파일 첨부	용량제한 30MB
③ 기타 제출서류	파일 첨부	

5

평가 및 선정

□ 평가절차 : 총 2단계 평가 (서류 → 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발표평가	④ 최종선정
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	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(2배수 내외 선정)	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선정 확정 및 (협약체결확인서 제출)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
~'25.4월 초	~'25.4월	'25.4~5월	'25.5월

**신청자(기업)에 대한 요건검토, 사업계획서 유사증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
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시 선정·협약 취소 예정**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·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
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평가 (가점 포함)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,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
*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, **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가점 증빙서류만 인정**

** 평가 분과는 모집 세부 분야(전문기술분야)에 따라 구분되며, 평가 과정에서 변경·통합될 수 있음

-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'창업기업확인서' 등 요건검토를 위한 서류를 요청할 예정이며, 창업기업 확인서 미제출 시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가능

*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(약 3주)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필요,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처 등 **자세한 사항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별도 안내예정**

<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>

구분	대상	점수	비고 (제출서류 등)
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1년* 이내 5억원(현금)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* 투자계약일이 최근 1년('24.2.20.~'25.2.19.) 이내이고, 해당 투자금이 공고 마감 시('25.3.13.)까지 입금된 증빙이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	1점	투자계약서, 주주명부, 입금증 등

구분	대상	비고 (제출서류 등)
서류평가 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도전! K-스타트업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 ※ 수상아이템, 수상기업,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	제출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5.1월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※ 단, 중소벤처기업부 K-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아이템, 수상기업,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 중 청년재창업자* * 청년재창업자 :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연령이 만39세 이하인 창업기업 	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

-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및 우선선정 대상자일지라도, 본 사업 신청·접수(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)를 완료하여야 하며, 공고문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

- *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자는 사업 신청(온라인) 시 해당란 체크 필수
- **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자의 경우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 과정은 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,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최종 선정 T/O를 두고 있지 않음
- *** 서류평가면제 대상 중 도전!K-스타트업 2024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 및 CES(25.1월 개최) 혁신상 수상기업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 아이템과 기(既) 지원(수상)받은 사업 아이템의 핵심 요소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틸락 처리될 수 있음

③ 발표평가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(동 사업 신청자)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- * 평가시간 : 30분 이내(발표 15~20분 이내 + 질의응답)
 - **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
- 우선선정 대상 기업도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

< 우선선정 대상 >

구분	대상 기업	비고 (제출서류 등)
우선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및 최우수상 수상팀 * 수상아이템, 수상기업,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	제출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5.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* 단, 중소벤처기업부 K-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아이템, 수상기업,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'D-DAY'(디캠프), '정주영 창업경진대회'(아산나눔재단) 입상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	

④ 최종선정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< 최종선정 대상자의 '협약체결확인서 제출' >
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'협약체결확인서' 제출 요청^{*}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(일반형)」 '협약체결확인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*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, 위 발송일 기준
- ※ '협약체결확인서'를 제출할 경우, 확인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 (확인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됩니다.
- * 예비창업패키지, 초기창업패키지, 초격차 스타트업 1000+프로젝트,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 (프리TIPS, 창업사업화, 포스트TIPS), 특화 창업패키지, 창업중심대학, 재도전성공패키지,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, 딥테크 벤처업 프로그램,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
- ※ 단, 이미 '협약체결확인서'를 제출한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인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합니다.
- ※ 제출한 '협약체결확인서'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정부지원 사업비^{*}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- 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- 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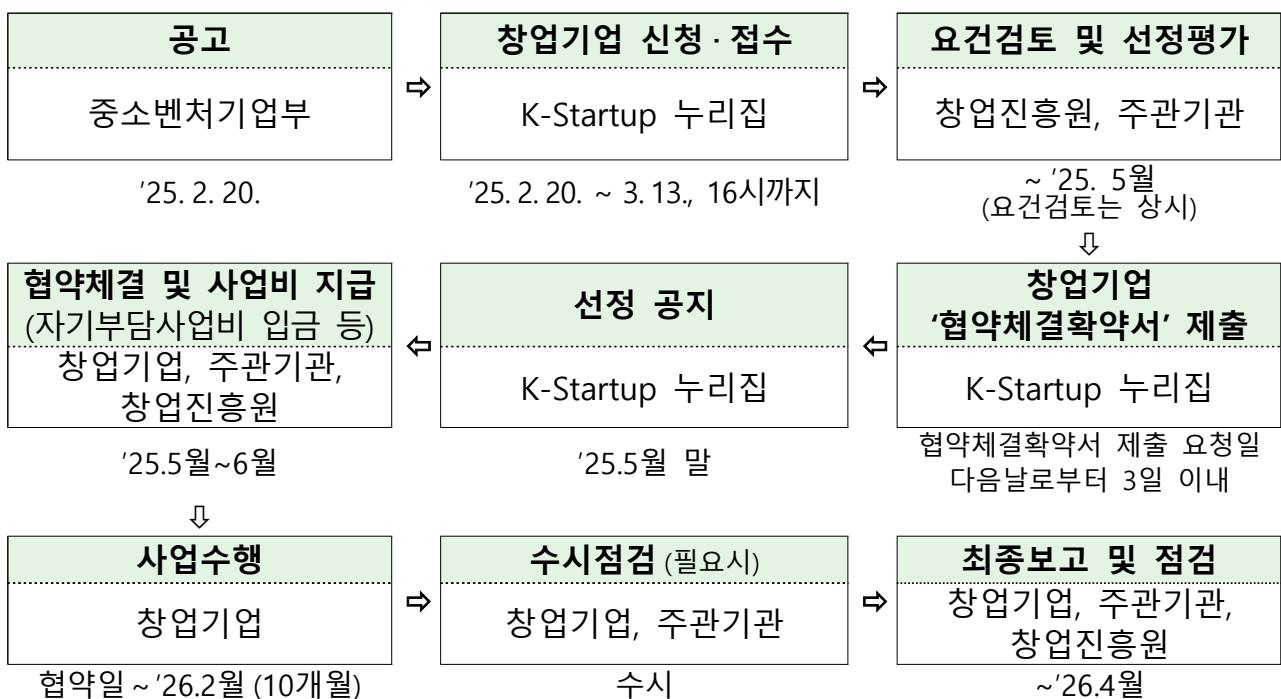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*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,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(필요성) 및 현황 등
실현가능성	• 창업아이템 목표시장(고객) 분석, 시장진입 현황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및 자금 운용 계획 등
팀(기업) 구성	•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, 보유 인프라 활용 계획 등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6

유의사항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
* 창업진흥원 누리집(www.kised.or.kr) > 고객광장 > 기업민원 피해신고

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
 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이 확인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동 사업 신청자는 '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및 기타 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함
- '성공환원형'은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신청 시 희망(신청)한 경우에만 해당되며, 선정된 이후 추가 지원사업비(성공환원형)를 포기할 경우 '일반형' 선정도 취소됨
 - * '성공환원형' 관련 자세한 사항은 [붙임 6] 확인

< K스타트업 누리집 성공환원형 사업 신청 화면(4. 일반현황) >

사업비 신청		✓ 필수입력 사항입니다.
기본 지원사업비 신청 금액(단위 : 원) <input type="text"/>		
성공환원(추가 지원사업비) 신청 여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		

□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사업 신청 마감시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
-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 하여야 하고,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
- 주관기관에 배정된 창업기업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,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
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관련 유의사항
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 - 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'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(PMS)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대표자의 사망,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,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창업진흥원 또는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
- 국외창업의 경우, 사업에 신청·선정한 국내 법인·영업소에서 해외법인(본점)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금 집행·관리 등이 가능해야 하며, 불가능한 경우 선정·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'25년 창업도약패키지(일반형) 선정기업 중 성공환원형 신청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지원사업비 외에 '추가 지원사업비'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세부 사항은 선정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
* [붙임 6] 참고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('25.5~6월 예정)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※ 해당시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음

□ 사업 신청 문의

- 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- (신청 등 사업 관련 문의) 주관기관 담당자

(주관기관명 가나다순)

No	주관기관명	지역	연락처	현장 사업설명회 일정(주소)
1	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	경남	055-291-9336, 9307, 9308, 9345, 9356	■ '25. 3. 5.(수) 14시 ~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4층 413호 (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)
2	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	대구	053-950-6095, 6092, 6097	■ '25. 2. 25.(화) 14시 ~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3층 307호 (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)
3	광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	광주	062-610-2456, 2423, 2461, 2410	■ '25. 2. 25.(화) 14시 ~ 전일빌딩 9층 다목적강당 (광주 동구 금남로 245)
4	부천산업진흥원	경기	032-716-6510, 6511	■ '25. 3. 5.(수) 14시 ~ 그라운드 21 (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, 21층)
5	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	충북	043-299-8690~4	■ '25. 3. 4(화) 16시 ~ 이안스퀘어 1층 (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91)
6	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	울산	052-283-7132~5	■ '25. 2. 26.(수) 14시 ~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대회의실 (울산 북구 산업로 915)
7	인천테크노파크	인천	032-858-6592, 6593	■ '25. 3. 4(화) 14시 ~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1 408호 교육실 (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)
8	한국보건 산업진흥원	서울	02-2095-1734, 1740, 1752	■ '25. 2. 26.(수) 14시 ~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3층 BI공간 (서울 중구 칠판로 36, 연세봉래빌딩)
9	한국수자원공사	대전	042-629-5368, 5385~5389	■ '25. 2. 25.(화) 10시 ~ 대전역 한국철도공사(본사) 2층, KTX 산천 회의실(대전 동구 중앙로 240)
10	한국탄소 산업진흥원	전북	063-219-3673~6	■ '25. 2. 28.(금) 14시 ~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 3층 (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)

*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◆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, 창업 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불임 1

창업 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	상세 구분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	창업아님 창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창업 창업
		폐업 3년 초과	창업아님
		폐업 3년 까지	창업
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아님
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
		-	창업
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창업 창업
		폐업 3년 초과	창업아님
		폐업 3년 까지	창업
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아님
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동종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창업
		-	창업아님
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
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
	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창업아님
		이종	창업

- ※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·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**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의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:
 - ① 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 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 - ② 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불임 2

국외창업 요건 및 범위

※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2호의 2의 “실질적인 지배력”에 대한 요건임
단,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불구하고, 창업기업이 아닌 법인이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

① 국외 창업 요건 ※ 아래 요건 ①, ② “모두” 충족되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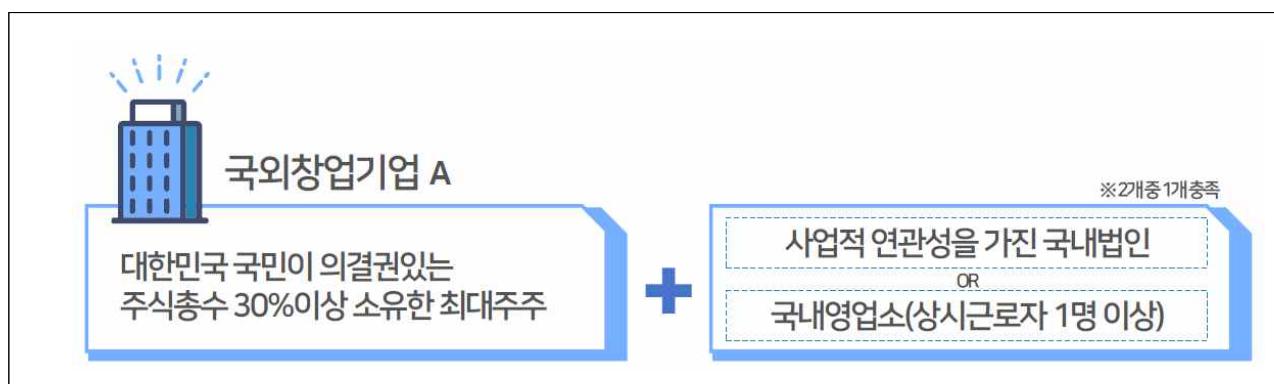
- 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
- ②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

② 국외 창업기업 범위 ※ ① 요건 모두 충족한 외국 법인 중, 아래 1개 이상 요건 충족

- 대한민국 내에 사업적 연관성*을 가진 법인(외국법인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를 말한다)을 보유할 것
 - * [참고] 「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9조(국외 창업기업의 범위)」
① 국내 법인과 그 법인이 국외 창업한 외국법인 상호간에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, ②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 고용
-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*를 설치·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(상시근로자의 국적은 불문)

* [참고] 상법 614조

< 국외창업 요건 및 범위 예시 >



3 국외 창업 여부 확인표

○ (국내부터 창업 : 先 국내 창업 → 後 해외 창업)

국내	국외	국외창업 여부	국외창업 기산일
개인사업자 (유지)	법인 설립 (30% 이상 소유+대표성)	해당(국내경제 기여요건 충족시)	국외 법인 설립일
	법인 설립 (30% 미만 소유+대표성)	비해당(국외창업 아님)	-
개인사업자 (폐업)	법인 설립 (30% 이상 소유+대표성)	해당(국내경제 기여요건 충족시) * 국외 법인의 국내 영업소 신규설립	국외 법인 설립일
	법인 설립 (30% 미만 소유+대표성)	비해당(국외창업 아님)	-
법인사업자 (유지)	법인 설립 (30% 이상 소유+대표성)	해당(국내 경제기여요건 충족시)	국외 법인 설립일
	법인 설립 (30% 미만 소유+대표성)	비해당(국외창업 아님)	-
법인사업자 (폐업)	법인 설립 (30% 이상 소유+대표성)	해당(국내 경제기여요건 충족시) * 국외 법인의 국내 영업소 신규설립	국외 법인 설립일
	법인 설립 (30% 미만 소유+대표성)	비해당(국외창업 아님)	-

* 국내 창업 이력 관련 현행 시행령상의 창업 제외 기준 등을 미적용한 예시

** 국내 경제 기여 요건 : 시행령안 제3조의2 제1호, 제2호

○ (해외부터 창업 : 先 해외 창업 → 後 국내 창업)

국외	국내	국외창업 여부	국외창업 기산일
법인사업자 (유지)	별도 법인 없음 (영업소(지점) 설립)	해당(국내 경제기여요건 충족시)	국외 법인 설립일
	법인 설립 (30% 이상 소유)		국외 법인 설립일
	법인 설립 (30% 미만 소유)		국외 법인 설립일

* 국내 창업 이력 관련 현행 시행령상의 창업 제외 기준 등을 미적용한 예시

** 국내 경제 기여 요건 : 시행령안 제3조의2 제1호, 제2호

▶ (참고)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 2 및 제 3호의 2

2의2. "국외 창업"이란 대한민국 국민(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)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

3의2. "국외 창업기업"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.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불임 3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통주점업	56211
2	무도유통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외 경제질서,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 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불임 4

패스트트랙 자격기준

패스트트랙 해당 사업

구분	해당사업	자격요건
초기	'22~'24년 초기창업패키지	참여기업 (중단·포기·실패 기업 제외)
	'22~'24년 창업중심대학(초기 창업기업)	
재도전	'22~'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	

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

구분	세부 자격요건	증빙서류
①~③ 중 기본 1개	<p>① '22~'24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</p> <p>② '22~'24년 창업중심대학(초기) 참여기업</p> <p>③ '22~'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</p> <p>* 단, 참여기업의 대표자, 기업명, 아이템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</p> <p>** '24년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, 협약종료 전 중단·포기·실패 시 최종선정 제외</p>	- 증빙자료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
①~③ 중 필수 1개	<p>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(대표자 제외) 10인 이상 기업</p> <p>②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(*'24년 결산 기준)</p> <p>③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- 재무제표(손익계산서)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-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, 입금증 등

*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

불임 5**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**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•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2	• 초기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3	•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	중소벤처기업부
4	•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(프리 TIPS)	중소벤처기업부
5	•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(창업사업화)	중소벤처기업부
6	•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(포스트 TIPS)	중소벤처기업부
7	• 특화창업패키지(통합창업패키지)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8	•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9	•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10	• 신사업창업사관학교	중소벤처기업부
11	•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12	•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3	•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4	•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5	•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6	• 예술기업 성장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7	•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8	• 스포츠산업 창업중기(액셀러레이팅)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9	•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0	•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1	•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2	•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3	•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	문화체육관광부
24	•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5	•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	환경부
26	• 농식품 벤처육성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7	•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특화 창업지원	방위사업청
28	•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(DATA-Stars)	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붙임 6

성공환원형 주요사항 안내

- (운영개요) 사업신청 시 '성공환원형'을 희망한 창업기업 중 '일반형'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사업화자금을 추가로 지원

구분	용어 설명
성공환원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일반형에 선정된 도약기 기업 중 정부지원사업비의 환원을 확약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유형
기본 지원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'일반형' 선정 시 배정받은 정부지원사업비
추가 지원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기본 지원사업비의 50%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 * 단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지원사업비의 50% 미만으로 지급될 수 있음
성공환원금 반납(납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성공환원형 창업기업 중 최종평가 판정 결과, '성공(최우수, 우수, 보통)'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은 <u>추가지원사업비의 최대 50%를 성공환원금으로 납부</u>협약종료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<u>최대 5년 동안 매년, 전년도 매출액의 1% 이상을 성공환원금으로 반납(납부)</u>

- (지원대상) '25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선정기업(자) 중 선정평가 순위가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'성공환원형' 창업기업으로 선정

* 지원사업 신청시점에 '성공환원형'을 희망(신청)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선정된 이후에 '추가지원금'을 포기할 경우 '일반형' 선정도 취소됨

** '일반형' 선정평가 순위 및 예산 한도에 따라 '성공환원형' 창업기업을 선정하며 공고신청 시 '성공환원형'을 희망(신청)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후 '추가지원사업비'를 지원받을 수 없음

- (추가 지원사업비 결정 금액) 일반형 선정 시 배정받은 기본 지원사업비의 50%로 정액 배정이 원칙이며, 임의로 추가사업비 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

* 단, 평가 결과(순위)에 따라 주관기관별 마지막 순위로 성공환원형에 선정되는 경우 기본 정부 지원사업비의 50% 미만으로 배정될 수 있음

- (사업비 사용) 추가 지원사업비도 정부지원사업비로 간주되며,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·관리

< 총사업비 구성 예시('성공환원형'에 선정된 경우) >

기본 지원사업비* (A)	추가 지원사업비** (B)	최종 정부지원사업비 (C=A+B)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(D)		총사업비 (E=C+D)
			현금	현물	
100백만원	50백만원	150백만원	22백만원	43백만원	215백만원
			(69.8%)	(10.2%)	(20.0%)
					(100%)

* 주관기관의 사업비 배정 심의 후, 일반형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배정받게 되는 기본 정부지원사업비

** B=A의 50%(단,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지원사업비의 50% 미만으로 배정될 수 있음)

□ (성공환원금 반납 기한) 창업기업 협약종료("26.2월) 후, '27년부터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(최소 1%)을 다년(최대 5년)에 걸쳐 반납

□ (성공환원금 반납 기준) 창업기업 최종평가 결과에서 “성공” 판정 시
추가 사업화자금의 최대 50% (다년간, 매년 전년도 매출액 기반) 반납

* 성공환원금은 분할 납부가 불가하며, 매 년 납부금을 고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납부 기한 내 미납되는 경우,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음

□ (추가지원사업비 환수 기준) 성공환원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거나, 최종평가 시 미흡 또는 극히불량 판정을 받는 경우 등 지침 상 환수기준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여받은 경우 환수 조치

- 성공환원금을 기한 내에 미납하는 등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,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 의무액을 추가지원사업비의 50%로 변경하여 환수 조치
- 성공환원형 창업기업 중 최종평가시 ‘미흡*’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은 추가지원사업비의 70%, ‘극히불량**’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은 추가지원사업비의 전액 환수 조치

* 미흡 :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사망, 천재지변, 외부 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실패하는 경우(성실실패)

** 극히 불량 : 기존 사업자를 휴폐업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(불성실 실패)

< 성공환원금 회수 또는 추가지원사업비 반납금 환수 기준(예시) >

정부지원사업비		금액 (예시)	최종평가 판정 결과 기준 회수 및 환수금		
			성공	실패	
				미흡	극히불량
정부 지원 사업비	기본지원사업비	1.3억원	추가지원사업비의 최대 50%를 성공환원금으로 회수 (최대 0.325억원)	추가지원사업비의 70% 환수 (0.455억원)	추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(0.65억원)
	추가지원사업비	0.65억원			
	합계	1.95억원			

※ 상기 내용은 ‘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’ 및 ‘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’ 개정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선정자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